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내란·외환죄 등 관련 구속기간 연장 등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01호)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24호)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42호)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73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내란·외환죄 등 관련 구속기간 연장(서영교의원안 제92조의2 신설, 이성윤의원안 제92조제3항 신설 및 박희승의원안 제92조제2항) ...	5
2.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시 조건 부과(이성윤의원안 제92조제4항 신설 및 김기표의원안 제92조제4항부터 제8항 신설)	17

I . 제안경위

1. 서영교의원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6. 17.

다. 회 부 일 : 2025. 6. 18.

2. 이성윤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6. 18.

다. 회 부 일 : 2025. 6. 19.

3. 박희승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6. 19.

다. 회 부 일 : 2025. 6. 20.

4. 김기표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6. 20.

다. 회 부 일 : 2025. 6. 2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서영교의원안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수사 대상이 방대한 경우 구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조사 및 수사대상이 방대해 구속기간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어 증거인멸과 도주를 예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2. 이성윤의원안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3. 박희승의원안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4. 김기표의원안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Ⅲ. 검토의견

1. 내란·외환죄 등 관련 구속기간 연장(서영교의원안 제92조의2 신설, 이성윤의원안 제92조제3항 신설 및 박희승의원안 제92조제2항)

가. 주요내용

세 개정안은 피고인이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서영교의원안),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박희승·이성윤의원안)에 심급별 구속기간을 연장¹⁾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서영교의원안	이성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생략)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현행과 같음)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현행과 같음)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심급마다 2개월</u> 단위로 <u>2차</u> 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 ----- ----- ----- <u>2개월</u> ----- ----- <u>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u> 에-----

1) 서영교의원안,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1심은 6개월, 상소심은 1년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이성윤의원안, 심급별 최대 10개월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박희승의원안, 보통사건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고, 내란·외환,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 등의 경우 심급별 최대 10개월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현행	서영교의원안	이성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있다. 다만, <u>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u> ----- ----- ----- ----- ----- -----. 1. <u>피고인이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u> 2. <u>피고인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u> 3. <u>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u> 4. <u>피해자와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협의 우려</u>

현행	서영교의원안	이성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신설>			가 있는 때 5.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 는 기일 불출 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 가 심리가 필요 한 때
<신설>			6.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 여 재구속된 때
<신설>		③ 제1항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 차에 한하여 결 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형 법」 제2편 제1 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 의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현행	서영교의원안	이성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신설>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①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편제2장 외환의 죄의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위해 · 보복· 회유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서영교의원안	이성윤의원안	박희승의원안
		<u>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심급별 구속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u> <u>④ 제92조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u>		

나. 구속 및 구속기간

1) 구속 및 구속기간의 개념

구속이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하는 제도²⁾로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함.

구속기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으로 보고 있음.³⁾

2) 구속기간의 제한 및 불산입 기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음.⁴⁾ 다만,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은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박현준, 한상훈, 『경찰과 형사사법』, 박영사(2020년), p.210-211

3)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4)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4항,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연혁 및 입법취지

형사소송법 제92조는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구속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규정임. 이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제92조를 통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됨.

해외 입법례는 피고인 구속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장기간 구금의 폐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 후 극심한 이념대립과 사회혼란 속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경찰과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였던 6개월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초안에 삽입되었기 때문임.⁵⁾

5)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59면 참조.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제92조에 대해 위헌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는 유사 입법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구속기간 만료 전에 재판을 종결하려고 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등의 부작용 문제점,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 방지는 일률적 구속기간 제한보다는 구속취소나 보석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이러한 일률적 구속기간 제한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⁶⁾하였음.

이에 2007년에 제92조가 개정되어 구속기간 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현재와 같이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제1심은 최대 4개월을 갱신할 수 있고(공소제기일부터 기산), 항소심과 상고심 최대 6개월을 갱신할 수 있게 됨.⁷⁾

다. 해외 입법례

1) 미국

미국은 피의자가 체포 후 경찰 단계에서 석방되거나 법원에 인치되어 최초출석(initial appearance) 또는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 절차

6) 전원재판부 99헌가14, 2001. 6. 28.

7) p.27 참고자료 참조

단계에서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되고, 구속된 자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규범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음.⁸⁾

2) 영국

영국은 기소 전 경찰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상한을 96시간으로 정하고, 치안법원 최초출석 시부터 치안법원의 간이재판 또는 형사법원의 정식재판 개시 전까지의 구금기간을 범죄의 종류나 재판법원에 따라(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56일, 선택가능범죄 중 치안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 70일 또는 56일, 선택가능범죄 중 형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 70일, 정식기소범죄의 경우 형사법원 이송 전까지 70일, 이송 후 기소인부 절차까지 112일 합계 182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별다른 구속기간 제한이 없음.⁹⁾

3) 독일

독일에서 피의자·피고인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독일 형사소송법 제121조). 그러나 수사의 어려움 또는 방대함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아직 판결될 수 없고, 6개월을 경과하여 구속 유지가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이내 단위로 고등법원의 특별 구속심사(구속유지심사)를 받아 횡수 제한 없이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제121조 및 제122조 참조).

8)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63-76면 참조.

9)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85면 이하 참조.

다만, 독일 형사소송법 제122a조는 ‘재범의 위험을 이유로 구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독일 형사소송법 제121조제3항에 의하면, 6개월 구속기간 경과 전에 공판이 개시된 경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6개월 구속기간이 진행하지 않음.

즉, 공판개시 후에는 고등법원의 특별구속심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비례성원칙에 따라 매우 장기기간의 구속이 제한될 뿐임.¹⁰⁾ 독일 구속 통계에 의할 때, 2011-2020년에 구속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도별 전체 구속인원의 5% ~ 8.5% 정도에 이름.¹¹⁾

라.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장기화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중대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사건에 심리 기간을 확보하여 심리를 충실화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심리가 길어지는 경우에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재판 지연을 막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98면 이하 참조.

11) 김윤선,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 116면 이하 참조.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헌법재판소는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으로 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예외에 대하여 또 다시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상충되는 긴장관계의 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며,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¹²⁾한바, 구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에 있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비례성을 형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상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바, 구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은 사실상 형의 집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와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구속기간 연장사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라는 요건은 재범 발생의 위험성의 기준 특정되지 않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의 경우는 사건의 범위가 특정된 바 없어 모든 사건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기간 연장 사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2) 전원재판부 90헌마82, 1992. 4. 14.

마.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나, ①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제도와 함께 도입하여 피고인의 기본권도 함께 보장하는 방안, ② 구속기간의 예외로 내란·외환의 죄만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죄와 형평성 측면에서 법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③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시 조건 부과(이성윤의원안 제92조

제4항 신설 및 김기표의원안 제92조제4항부터 제8항 신설)

이성윤의원안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8조¹³⁾ 각 호의 보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기표의원안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시 피고인에게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공범 등 접촉제한, 증거인멸·도주 방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소환에 불출석하거나, 부과조건을 위반한 때에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이성윤의원안	김기표의원안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②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u>④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필</u>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 되어 피고인을 석방하</u>

13)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현행	이성윤의원안	김기표의원안
<신 설>	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다.	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이 석방 중 준수하도록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1. 제98조제3호의 조건 2. 제98조제4호의 조건 3. 공범 등 법원이 정하는 자와의 연락·면담 등 접촉의 제한 4. 그 밖에 피고인의 증거인멸 또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1. 도망한 때 2.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현행	이성윤의원안	김기표의원안
<u><신 설></u>		<u>아니한 때</u> 3.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⑥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 및 갇신의 제한은 제5항에 따른 구속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⑧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가. 구속기간 제한의 취지와 재구속

구속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한 것이나,¹⁴⁾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사소송법」 제92조¹⁵⁾는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¹⁶⁾

다만, “피의자 구속”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¹⁷⁾에서 재구속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는 재구속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¹⁸⁾ 이는 검사가 영장신청의 주체인 피의자 구속과 달리, 피고인 구속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¹⁹⁾이 행하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²⁰⁾

14) 이재상·조균석·이창운, 형사소송법. 2022, 174쪽;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98쪽

15)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십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결정례

17)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8) 대법원 1985. 7. 23자 85도12 결정

19)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 신동운, 앞의 책, 798쪽

나. 피고인 보석 제도 개관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영장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규정함.²¹⁾

이는 보증금 예치 등의 조건을 통해 피고인의 공판절차 및 형집행 출석을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 확보라는 구속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서, 무죄추정 원리에서 유래하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²²⁾

「형사소송법」 제98조²³⁾는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21)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2)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결정례 참조

23)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⁴⁾

다. 피고인 구속제도 개선 논의 및 해외 입법례

피고인 구속과 관련하여서는 i)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²⁵⁾ ii) 구속과 보석 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보석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²⁶⁾, 구속 적부심 청구, 보석청구, 구속 취소 청구, 구속집행정지신청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피구속자에 대한 석방심사제도를 일원화하자는 의견²⁷⁾ 등이 있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²⁸⁾ 미국의 경우 연방형사소송규정(18 U.S.C.)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법관 앞에 출석하면, 법관은 공판 전에 해당자에게 출석서약부 석방, 조건부 석방, 구금 등을 결정하며, 재판 중 구속기간도 제한이 없고, 석방 시 부과조건을 위반하면 석방취소, 구금명령 및 법정 모욕죄 기소대상이 됨.²⁹⁾

24) 법률 제84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제정·개정이유서 참조

25)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는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6. (의안번호 제173759호)에 담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①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장기인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도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 ② 조건부 석방결정과 관련하여 전판예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보증금 등 납부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26) 최병천,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 형사법연구 제36권제2호, 288쪽

27) 박정남,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제1호, 2024, 92쪽 이하 참조

28) 법원행정처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등 참조

29) 미국 형사소송절차규정(18 U.S.C.)

제3141조 일반적 석방 및 구금 권한

(a) 공판 전 - 이 편 제3041조에 따라 체포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 법관은, 체포된 사람이 법관 앞에 섰을 때, 이 장에 따라 공판 전에 해당자의 석방 또는 구금을 명령한다.

독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장기구속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속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사안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에 비추어 구속 계속이 비례성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속취소된 피고인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음.³⁰⁾

일본의 경우, 구류기간을 공소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2개월로 하면서, 피고인이 사형·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주거불명 등에는 횟수 제한 없이 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전제에서, 구속기간 만료 시 별도로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음.³¹⁾

(b) 선고 또는 상소 전 - 범죄에 대한 제1심 관할 법원 법관 또는 연방 상소심 법원 법관은 형 선고 또는 집행 전, 또는 유죄 판결 또는 양형에 대한 상소 전에 해당자의 석방 또는 구금을 명령한다.

제3142조 공판 전 피고 석방 또는 구금

(a) 일반 -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법관 앞에 출석하면, 법관은 공판 전에 해당자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한다.

(1) 이 조 제(b)항에 따른 출석 서약 또는 무담보 출석 보증을 바탕으로 한 석방

(2) 이 조 제(c)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

(3) 이 조 제(d)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취소, 추방 또는 입국 금지를 위한 일시구금

(4) 이 조 제(e)항에 따른 구금

제3148조 석방 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a) 가능한 제재 - 이 편 제3142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석방 취소, 구금 명령 및 법정모욕죄 기소 대상이 된다.

30) 독일 형사소송법

제120조(구속영장의 취소) ①구속을 위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의 계속이 사안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처벌이나 보안처분에 비추어 비례성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무죄석방되거나, 공판절차의 개시가 기각되거나 또는 절차가 단지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2조a(1년 이상의 구속) 제1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구속이 제112조a의 구금사유에 근거한 때에는 그 집행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31) 일본 형사소송법

제60조 ②구류기간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2개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1개월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제89조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은 1회에 한한다.

제89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혹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때
3.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때

참고로,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49호, 2024. 12. 3.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라. 검토의견

개정안은 구속기간 만료 시 피고인의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불구속상태에서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 집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 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하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개정이유로 하나, 피고인 구속의 경우에는 피의자 구속과 달리 재구속 제한 규정³²⁾이 없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구속의 사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6. 피고인의 성명 또는 주거가 불명한 때

32)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 구속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는 무죄추정 원칙에서 도출되는 불구속재판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법에서 허용한 구속기간 연장까지 완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과하여 구속의 위험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셋째, 피고인 구속제도와 관련해서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보석제도와 연계 등의 논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 부과 외에도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의 관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조건 및 그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형사소송법」 33)은 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33)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김기표의원안 제92조제5항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출석 불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개정안에 따른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재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서, 개정안의 조건과 재구속 사유도 구속사유에 맞춰 검토가 필요함. 이성윤의원안 제92조제4항의 경우 조건 부과만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된 조건 위반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지 않은바 보완이 필요함.

정리하면, 개정안은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 부과를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 집행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재구속을 제한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태도,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에게 다시 구속의 위험을 부담시킬 필요성, 구속제도 개선 관련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구속기간 만료 후 조건부 석방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인신구속 및 석방제도와 체계적으로 정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구속 영장 심사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

참고

법원의 구속기간 정리

□ 형사소송법 법원의 구속 기간 (형사소송법 제92조)

2007년 6월 1일 전 형사소송법은 심급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구속 가능한 최대기간으로 14개월(6+4+4)을 규정하였으나, 2007년 6월 1일 이후 형사소송법은 상소심(항고심, 상고심)의 심리기한을 고려하여 상소심의 경우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구속기간이 최대 18개월(6+6+6)까지 가능해짐.

형사소송법 [시행 2006. 8. 20.] [법률 제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현행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u> 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u>구속기간은 2개월로</u>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u> 할 수 있다. <u>다만, 상소심은</u>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u>3차에 한하여 갱신</u>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현재 형소법의 최대 법정구속 기간은

- 1심부터 구속하는 경우 : 18개월(2+4+6+6)

1심에서 법원이 구속하는 경우 2개월(제92조 제1항) + 4개월(갱신 2회 : 제92조 제2항 본문) + 2심에서 6개월(갱신 3회 : 제92조 제2항 단서) + 3심에서 6개월(갱신 3회 : 제92조 제2항 단서)

- 2심부터 구속하는 경우, 1심 종결과 동시에 1심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 : 14개월(2+6+6)

1심에서 법원이 구속하는 경우 2개월(제92조 제1항) + 2심에서 6개월(갱신 3회 : 제92조 제2항 단서) + 3심에서 6개월(갱신 3회 : 제92조 제2항 단서)

- 3심부터 구속하는 경우, 2심부터 종결과 동시에 2심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 : 8개월(2+6)

2심에서 법원이 구속하는 경우 2개월(제92조 제1항) + 3심에서 6개월(갱신 3회 : 제92조 제2항 단서)